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제도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설비건설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지연하는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증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제도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 2006년도 현재 영업정지: 82개사, 과태료 : 14개사, 과징금 : 8개사 제재

제도 / 내용	근거조문	주요 내용	통보 방법	위반시 제재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건설법 제9조 4항 시행령 제12조의2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시정명령 ⇒ 불이행시 ⇒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증 (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고	건설법 제9조의 2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 30일 이내에 건설업등록관청에 변경 신고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50만원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법 제22조제4항 시행령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04.1.1부터) 건설공사(민간·공공공사 모두 해당)를 원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새로이 기재하여야할 사항이 발생시에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직접시공 계획서 통보	건설법 제28조의 2 시행령 제30조의 2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원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는 내용의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	15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도 / 내용	근거조문	주요 내용	통보 방법	위반시 제재
하도급계약 통보	건설법 제29조제5항 시행령 제32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해제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의해 통보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150만원이하의 과태료
건설업양도 신고	건설법 제17조 제1항 시행규칙 제18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건설업법인의 합병(상속)신고	건설법 제17조2항 시행규칙 제19조1항	일반(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상속을 받은 경우도 준용)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건설업 폐업 신고	건설법 제20조의2 제85조의2	건설업을 등록한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폐업을 신고하여야함. 단, 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중전지위(공사실적, 영업정지 효과, 위법사실 등)가 승계 됨	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록말소(법 제83조 제11호)
기술자 현장배치 및 확인	건설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 제5항시행규칙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함 •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 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배치시:시정 명령 ⇒ 영업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술자 이탈시 과태료 30만원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통지	건설법 제14조제2항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그 처분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	서면통지 (별도서식 없음)	발주자에 의한 계약 해지가능성 부담



비싸야 산다 - 베블런 효과

비싸야 산다. 똑같은 옷이라도 싸면 안 사고 비싸면 산다. 이런 소비 현상이 바로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 다.

이 말은 1899년 미국의 사회학자 경제학자인 베블런T. B. Veblen이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상층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각 없이 행해진다."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사치를 일삼고, 또 가난한 사람들 역시 이를 열심히 모방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대한다는 것이다. 귀족 마케팅의 교과서로 불리는 경제학 이론이 바로 베블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유통업체들은 부자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 좀 더 고급스런 명품 브랜드를 입점 시키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백화점들은 아예 명품관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가진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손님이 오면 비싼 물건은 보자기에 씩씩 보이지 않게 했던 우리 선조들. 그들이 현대에 와서 베블런 효과가 만연한 세태를 보면 어떤 말씀들을 하실까.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